

제323회 임시회
2013. 9. 11.(수)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수)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강현삼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8월 22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9월 4일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강현삼 의원)

가. 제안이유

-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공포 '11.7.28, 시행 '12.7.29.)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 (안 제1조, 제13조)
 - 「야생동·식물보호법」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설치 지원근거 마련 (안 제16조)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근거
-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안 제4조, 제5조)
 - 환경보전자문위원회 ⇒ 환경정책위원회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리
 - 야생동·식물 ⇒ 야생생물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문홍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 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설치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13. 8. 2. ~ 8. 21.)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종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임업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을 추가하여 도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환경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연환경으로”를 “자연환경으로부터”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을 “(자연환경보전실천 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정한 때”를 “확정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있다고 인정되는”을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구역에 대하여는”을 “구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변경한 때에는”을 “변경하였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를 “그 밖의 사유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를 “환경정책위원회”로,

“관리기본계획”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을 “도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을 “제6조제1항을 위반하는”으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상당한”을 “적절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를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우에는 동”을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규정에 따라”로,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를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주민이 당해”를 “도민이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루어진 때에”를 “이루어질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역주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습지중”을 “습지 중”으로, “지역에 대하여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역에 대하여”를 “구역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야생 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야생 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충청북도보호야생동·식물(이하 “보호야생동·식물””을 “충청북도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을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을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호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한다”를 “제13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야생동·식물”을 “그 밖에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을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야생동·식물”을 각각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인한”을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로, “조사계획”을 각각 “자연환경조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지역에 대하여는”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기타”를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에 대하여는”을 “지역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제22조제3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위촉한 때”를 “위촉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작성하는 때”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래동·식물”을 “외래생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의 인접된 지역”을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을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보호야생생물”로 한다.

제30조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사람은”을 “사람에게”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6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제3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p>
<p>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관리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자연환경보전에 따른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하며, 자연환경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도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한다.</p> <p>4. (생 략)</p>	<p>제2조(기본원칙) 자연환경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보전·관리되어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자연환경 으로부터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p>	<p>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 -----</p>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충청북도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

----제8조에 따라 -----

-----.

② -----

-- 따라 -----

-----.

③ ----- 따른 -----

-----.

④ ----- 확정한
경우-----.

⑤ -----

----- 마련하여야 -----.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 각 호-----

----- 있는-----

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5. (생략)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하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정 또는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 구역은 -----

-----.

③ -----

----- 환경정책위원회의 -----
-----.

④ ----- 따
라 -----
-----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
-----.

⑤ -----

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협의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

그 밖의 사유로 -----

-----.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

환경정책위원회의 -----
-----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호-----

----- 따
라 -----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따른다.

1. 야생생물-----

기 위하여 화약류·땃·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4.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제7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2. ----- 인공구조물-----

3.·4.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 도민-----

3. ----- 해당 -----

제7조(중지명령 등) -----
----- 제6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경관보

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

-- 적절한 -----
----- . -----

----- .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
----- .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매수) ① -----

----- 경우에는 해당 -----
----- .

② ----- 규정에 따라 -----

-----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① -----
----- 도민이 해당 -----

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습지보호지역 지정) ① 도지사는 습지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습지 관리)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로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장 야생 동·식물보호

제13조(보호야생 동·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 이루어질 때 -----.

② 제1항에 따라 -----
----- 도민-----
-----.

제11조(습지보호지역 지정) ① ----
---- 습지 중 -----
----- 지역은 「습지보전법」 제
8조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습지 관리) ① -----

구역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야생생물 보호

제1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

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을 충청북도보호야생동·식물(이하 “보호야생동·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야생동·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그 밖에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명,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변경 또는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 충청북도보호야생동물(이하 “보호야생동물”-----.

1. ----- 야생동물
2. ----- 야생동물
3. ----- 야생동물

② -----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동물-----
----- 그 밖에 -----.

③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동물-----.

제14조(보호 야생동·식물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기타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야생동·식물을 누구든지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보호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출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도지사는 보호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정하고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① -

----- 제13조에 따라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할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야생생물-----

② -----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
-----.
----- 경우
는 제외한다.

③ ----- 보호야생생물 -----
----- 야생생물 -----

-----.

④ (현행과 같음)

⑤ ----- 보호야생생물-----

-----.
----- 범위-----
-----.

⑥ (생략)

⑦ 도지사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도지사는 밀렵도구나 교통사고, 농약중독, 기타 질병 등으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보호야생생물-----

그 밖에 -----

-----.

제15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

----- 그 밖의 -----

-----.

제16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
----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

----- 사람에게 -

<신 설>

제17조(자연환경조사)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생 략)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5. (생 략)

6. 기타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자연환경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를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 ----- 자연환경조사계획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따른 -----
----- 각 호 ----- .

1. 야생생물 -----
--

2. (현행과 같음)

3.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 생물 -----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략)

제18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정밀조사·보완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
----- 제17조에 따른 -----

-----.

② ----- 제17조에 따라 -----

----- 지역
은 -----.

제19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 따른 -----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1. (생략)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 없
을 때에는 -----.

제21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
-----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은 -----

-----.

1. (현행과 같음)
2.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및 그 밖의 -----

3. 그 밖에 -----

② -----

----- 지역
은 -----
-----.

제22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
----- 제21조
에 따른 -----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환경조사 등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생략)
4. 기타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

② ----- 범위 -----

----- 그 밖에 -----
-----.

③ -----
제21조에 따른 -----

-----.

1. 국공립연구기관
2. -----
-----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④ ----- 제1항에 따라 -----
-- 위촉한 경우 -----
-----.

⑤ 제4항에 따른 -----

조사원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
하는 때에는 지역주민과 관할 시
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고
시하여야 한다.

제2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
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
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
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적
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략)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
계가 교란된 지역
3. (생략)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
고 있는 지역

제25조(인접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
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야

-----.

제23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작
성하는 경우-----

-----.

제24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

- 보호야생생물-----

-----.

1. (현행과 같음)
2. 외래생물-----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25조(인접지역의 주민지원) ① --

생동·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의 인접된 지역은 보전 또는 보호지역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26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에 의한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정비 할 때에는 하천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경관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조성, 도민의 휴식지로서

- 야생생물보호구역-----
----- 인접지역은 -----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

-----.

제26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
-----.

② -----

----- 마련하여야 -----.

제28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
-----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
----- 범위-----
----- 야생생물-----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개,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의 경우에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
2. ~ 5. (생략)

제30조(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 훼손행위를 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

-----.

제29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
----- 각 호 -----

범위 -----.

1. 보호야생생물-----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교육·홍보) -----
----- 야생생물 -----

-----.

제32조(과태료) ① ----- 각 호 -----
----- 사람에게 -----
-----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2. 제7조에 따른 -----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② 제14조제3항에 따른 -----

-----.

③ ----- 제2항에 따른 -----
-----.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지원범위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자 및 피해를 입은 자
- 지원대상
 - 피해예방시설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업·임업·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피해보상 대상자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
- 지원비율
 - 피해예방시설 - 국비 30%, 지방비 30%(도비9, 시·군비 21), 자부담 40%
 - 피해보상 - 지방비100%(도비30%), 시군비(70%)

2. 비용 발생 요인

- 제16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피해예방시설 지원>

- 피해예방시설의 지원기준은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로 한다.

<피해보상 지원>

- 피해보상은 1회에 한하며 최대 500만원으로 하며, 피해액의 80%이내에서 보상한다.
 - 재원 : 시군에서 예산의 범위내 마련, 수렵장운영 수입금 사용
 - 시·군조례로 지원근거 마련

나. 추계 결과

- 피해예방시설 지원 : 연 950백만원[국비285(30%), 도85.5(9%), 시군비 199.5(21%), 자부담380(40%)]
- 피해보상 지원 : 연 465백만원[도비139.5(30%), 시군비 325.5(7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4.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5. 작성자 : 바이오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관계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1>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을 말한다.
 -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에서 정한 것
 -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III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2.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